##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02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유상범・김소희・김기현

김승수 • 고동진 • 이인선

김정재 · 송석준 · 조배숙

서범수 · 곽규택 · 서지영

김성원 · 장동혁 · 조정훈

주진우 · 나경원 · 정점식

박형수 권영진 의원

(2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면서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 피고인의 의사무능력과 질병, 기피신청, 공소장변경으로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등을 구속기간 산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구속 기소된 수인의 공범 중 일부 피고인만 기피신청을 한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정지되나 기피신청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관할 이전 신청,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사

실상 공판절차가 정지됨에도 구속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최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현행 구속기간 제도를 잠탈하고자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목적으로 관할 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형사소송규칙」상 관할 이전 신청 등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정지 기간 및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92조제3항).

####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3항 중 "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5조의2,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 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 2.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
- 3.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5조의2(소송절차의 정지) 법원
	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신청, 제14조에 따른 관할
	지정신청 또는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는 그 신청에 대한 상급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
第92條(拘束期間과 更新) ①・②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第22條, 第298條第4項, 第306	③ <u>다음 각 호의</u>
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	
하여 公判節次가 停止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	
<u>구금</u> 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u>&lt;신 설&gt;</u>	1. 제15조의2,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u>기간</u>
<u>&lt;신 설&gt;</u>	2.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

	구금 기간
<u> &lt;신 설&gt;</u>	3. 항고, 재항고에 따라 상급법
	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접
	수한 때부터 각 결정 후 원심
	법원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